

##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### 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#### 1) 모펀드 추가 및 부책임 운용역 변경

#### -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 8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9. 생략  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 2. 생략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 8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나. <u>KB 베트남 QVM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  9. 좌동  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<u>하며</u> , <u>제2조 제8호 나 목에 의한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</u> 다만, 각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<u>해당</u>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 2. 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부책임: 김세희/최영완	부책임: 김세희/ <u>장위식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변경 운용역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 참고	

#### -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 8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 8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

	<p>가.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나. KB스타 막강 단기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9. 생략</p> 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</p> <p>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아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되,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조 제8호 가 목의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제2조 제8호 가 목의 베트남 관련 주식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이하로 한다.</p> <p>나. 제2조 제8호 나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</p> <p>2. 생략</p>	<p>가.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나. KB 베트남 QVM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다. KB스타 막강 단기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9. 좌동</p> 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</p> <p>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아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되,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조 제8호 가 목 및 나 목의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제2조 제8호 가 목의 베트남 관련 주식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이하로 한다.</p> <p>나. 제2조 제8호 나 목의 베트남 관련 주식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</p> <p>다. 제2조 제8호 다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</p> <p>2. 좌동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<p>투자설명서</p>	<p>부책임: 김세희/최영완</p> <p>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</p> <p>※ 변경 운용역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 참고</p>	<p>부책임: 김세희/<b>장위식</b></p>

[ 운용역별 주요 경력 ]

운용역	주요 경력
장위식	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1년 6개월

※ KB자산운용([www.kbam.co.kr](http://www.kbam.co.kr)) 홈페이지(공지/공시→공시정보)의 「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」에서 해당 운용역의 과거 운용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2. 변경(예정)일 : 2019년 1월 24일